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407131 판결 [소유권경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록, 정덕교

피 고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채

변론 종결 2019. 8. 23.

판결 선고 2019.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와 2000. 6. 21. 접수 제63338호로 마친 1번 소유권경정등기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10. 27.접수 제104401호로 마친 2번 소유권경정등기의, 피고 C,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6. 21. 접수 제63339호로 마친 1번 소유권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D, E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피고 C 슬하의 자녀들이 다.

나. 망인이 1990. 11. 22. 사망하자,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원고들 및 피고들 앞으로 각 상속분(배우자인 피고 C는 3/11 지분,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D, E은 각 2/11 지분)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와 1991. 7. 16. 접수 제42786호로 1990. 11. 2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런데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피고 C, D 앞으로 각 1/2 지분씩 같은 등기소 2000. 6. 21. 접수 제63338호로 2000. 6.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피고 C, E 앞으로 각 1/2 지분씩 같은 등기소 2000. 6. 21. 접수 제63339호로 2000. 6.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망인이 생전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2. 4. 4.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원고들 및 피고들 앞으로 위 각 상속분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00. 10. 27. 접수 제104399호로 1982. 4. 4.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곧이어 피고 C, D 앞으로 각 1/2 지분씩 같은 등기소 2000. 10. 27. 접수 제104401호로 2000. 10. 25.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소유권경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한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 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조하여 주문 기재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효가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위 각 상속분에 관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들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999조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1) 그런데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는 2000. 6. 21.경 및 2000. 10. 27.경 각 마쳐진 것으로서, 2018. 8. 28.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경, 판사 이경민, 판사 박남진

목 록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답 698㎡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답 2846㎡
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답 1527㎡

1)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지자, 위 소유권경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임을 전제로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23. 선고 2013가단2111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나1124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8316 판결 참고.